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
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년 4월 1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미선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
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, 이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25조)
-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2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5년 4월 1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3
 - 전자메일 : asjasj123@korea.kr

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·소비문화의 확산) ①

시장은 시민의 생산·소비·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·홍보
 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
- ③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·관람료·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5조(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을 위한 생산·소비문화의 확산) ① 시장은 재화의 생산·소비·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		제25조(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을 위한 생산·소비문화의 확산)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·소비·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.		
②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·관람료·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		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	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			
제26조(탄소중립에 대한 교육·홍보) ①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·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		제26조(탄소중립에 대한 교육·홍보) ① 시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		

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.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·홍보

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·관람료·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